

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소 방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양 권 석

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09년 4월 6일 장주식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4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와 충청북도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간 명칭상이로 인하여 조례 불일치가 일어나는 바,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의 명칭을 의미에 맞도록 변경하고, 조례의 자구를 조례형식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조례제명변경 :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
- 자구변경 : 과장(담당관) → 담당관

4. 검토의견

이 개정조례안은 장주식 의원외 6인이 발의하여 불부합한 자구를 수

정하는 것으로

「알기쉬운 법령만들기」에 의거 조례제명과 직제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 이외 내용변동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